

제320회 임시회
기획경제위원회

정관 변경 보고

2023. 9. 6.



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

1. 변경사유

-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기관통합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」 (서울특별시조례 제8843호, 2023. 7. 24.) 개정 시행에 따라 서울연구원 정관 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- 정책연구와 기술과학 분야 융복합 혁신 연구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시민의 삶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재탄생 추진

2. 주요내용

- 제2조(목적) 및 제4조(사업)
 - “조사연구”를 “조사·기술개발·연구”로 변경
 - 기술연구원의 고유사업 내용 추가
 -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·기술개발·연구
 -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·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
 - “제2조의 목적달성”을 “도시문제 해결”로 변경
- 제5조(재산)
 - 기술연구원 설립출연 기본재산 5억원의 연구원 전입을 위한 근거 마련
 - 현행 “토지 및 건물”을 “금전 또는 토지·건물 등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”으로 확대
 - 세부 기본재산(별표 1) 변경은 청산절차 완료 후 진행 예정
- 제7조(운영재원)
 - 연구원의 운영재원을 “서울특별시의 출연금, 연구원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”으로 변경

○ 제14조(이사의 선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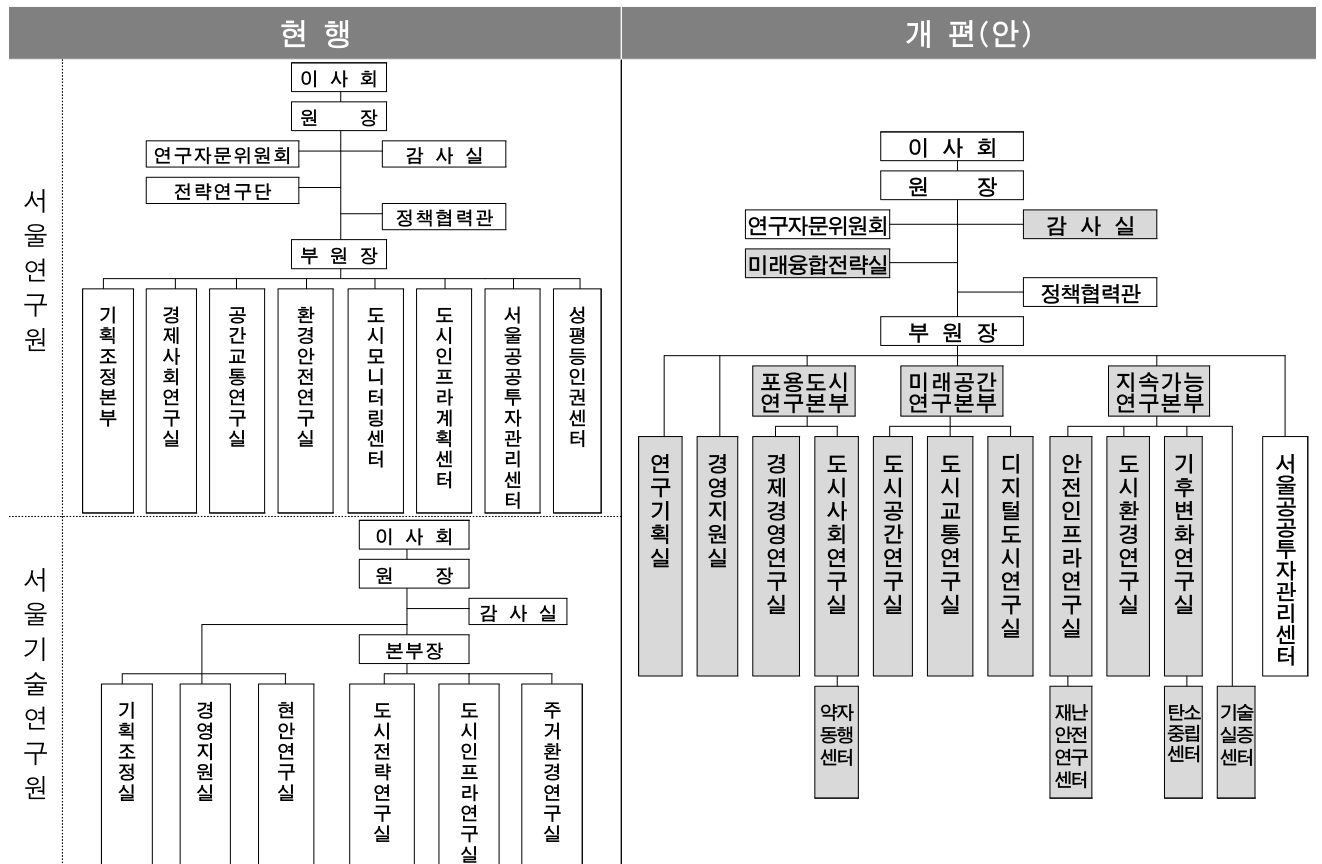
- 당연직 이사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안전총괄관”으로 변경
- 제14조제4항제2호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
- 제14조제4항제4호 중 “사회적 학식”을 “학식”으로 변경

○ 제20조(직제 및 정원)

- 조직(직제) : “감사실, 3본부, 11실, 5센터”로 개편

- 원장직속기구 : 통합에 따른 원장직속기구(감사실, 전략연구실)의 기능 확대
 - ⇒ 기존 ‘성평등인권센터’의 ‘감사실’로 기능 이관 및 하부 기능 확대
 - ⇒ 기존 ‘전략연구단’을 ‘미래융합전략실’로 재편하여 기관혁신과 융복합연구 활성화 추진
- 연구부서 : 통합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, 연구능 강화 및 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해 3본부 체제 도입
 - ⇒ ‘포용도시연구본부’ : ‘경제경영연구실’ 및 ‘도시사회연구실’ 로 재편
 - ※ 도시사회연구실 산하에 ‘약자동행센터’ 정규조직화
 - ⇒ ‘미래공간연구본부’ : ‘도시공간연구실’, ‘도시교통연구실’, ‘디지털도시연구실’ 로 재편
 - ⇒ ‘지속가능연구본부’ : ‘안전인프라연구실’, ‘도시환경연구실’, ‘기후변화연구실’ 로 재편
 - ※ 안전인프라연구실 산하에 ‘재난안전연구센터’ 정규조직화
 - ※ 기후변화연구실 산하에 ‘탄소중립센터’ 정규조직화
 - ※ 지속가능연구본부 산하에 ‘기술실증센터’ 정규조직화
- 연구지원부서 : 연구분야와 경영분야의 이원화를 통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확보
 - ⇒ 기존 ‘기획조정본부’를 ‘연구기획실’과 ‘경영지원실’로 재편

※ 별표 2(기구표)



- 정원(통합정원) : 342명 → 301명으로 축소

※ 통합연구원 정원 산정 기준 : “통합TF 6차 회의자료”

- 직급 체계는 양 기관의 기존 직급을 1:1로 통합
- 양 연구원의 행정 직종(일반직·전문직·관리운영직)은 ‘일반직’으로 통합
- 통합연구원의 정원 산정 기준에 따라 총 정원 및 직종별 정원 도출

※ 별표 3(정원표)

현 행					개 편(안)			
직 종	직 급	합 계 (A+B)	서울연구원 정원(A)	기술연구원 정원(B)	직 종	직 급	통합정원	증△감
계		342	234	108	계		301	△41
임원(상근)	원 장	2	1	1	임원(상근)	원 장	1	△1
연구직	선임연구위원	142	84	58	연구직	선임연구위원	115	△27
	연구위원							
	부연구위원							
	연구원	98	71	27		연구원	98	-
일반직, 전문직, 관리운영직	1 급	8	7	1	일반직	1 급	7	△1
	2 급	22	17	5		2 급	18	△4
	3 급	31	24	7		3 급	31	-
	4 급	23	14	9		4 급	15	△8
공무직		16	16	-	공무직		16	-

○ 제25조(의결정족수)

- 조문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제목 변경(의결정족수 ⇨ 의결방법)

3. 부 칙

○ 부칙 제1조 및 제2조 신설

- 시행일 및 기관통합에 따른 각종 조치 명시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목적) 연구원은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<u>조사·연구</u>하여 서울특별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사업) (생략)</p> <p>1. 서울특별시 행정 및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'의회'라 한다) 의정에 관한 중·장기계획 및 자료의 <u>조사연구</u></p> <p>2. 서울특별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<u>조사연구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<p>3.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, 원가계산 등의 수탁</p> <p>4. 서울특별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</p> <p>5.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·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</p> <p>6. (삭제)</p> <p>7.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요청에 따라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8. 기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p> <p>제5조(재산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서울특별시, 국내외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, 개인으로부터 양도나 기부받은 토지 및 건물</p> <p>3.~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운영재원)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, 기본재산의 과실수입, 용역수탁수입, 출판물 판매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 <p>제14조(이사의 선임) ① (생략)</p> <p>1.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및 행정국장</p> <p>2.~3. (생략)</p>	<p>제2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조사·기술개발·연구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제4조(사업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조사·기술개발·연구</u>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<u>조사·기술개발·연구</u></p> <p><u>3.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</u></p> <p><u>조사·기술개발·연구</u></p> <p><u>4.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·평가·실증 및</u></p> <p><u>기술사업화 지원</u></p> <p><u>5.~9.</u> (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</p> <p><u>10. 기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u></p> <p>제5조(재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<u>금전 또는 토지·건물</u></p> <p><u>등의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</u>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운영재원) ① -----</p> <p>----- <u>연구원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이사의 선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안전총괄관</u></p> <p>2.~3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~④ (생략) 1. (생략) 2. 산업계 :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임·직원으로 종사했던 사람 3. (생략) 4. 사회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</p> <p>제20조(직제 및 정원) ① 연구원의 조직은 [별표 2], 정원은 [별표 3]과 같다. ② (생략)</p> <p>제25조(의결정족수) ①~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설〉</p>	<p>②~④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 「<u>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-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<u>학식</u> ----- -----</p> <p>제20조(직제 및 정원) ① 연구원의 조직은 [별표 2], 정원은 [별표 3]과 같다.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5조(의결방법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5조(지식재산권 등의 귀속) ① 연구원의 임직원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. ② 지식재산권 취득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기관통합에 따른 각종 조치) 2023년 7월 24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서울특별시조례 제8843호)의 부칙에 따른다.</p>

서울연구원 조직개편(안)

〈서울연구원, 2023. 9. 6.〉

□ 통합 추진배경

- 정책연구와 기술과학 분야 **융복합 연구조직으로 재설계**
 - 시민의 삶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대안 연구기관으로 재탄생
 - 정책·기술분야 융복합 연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통합적 조직 구성
- 서울연구원의 틀을 활용하되, **양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통합 추진**
 - ‘지방자체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’에 의거 설립되어 30년 간의 연구조직을 운영한 서울연구원의 경험을 활용하되, 미래 혁신적 연구조직으로 통합 추진
- **유사중복 등 비효율성 해소하고 시너지 창출 가능하도록 통합 추진**
 - 서울시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(제9차, '22. 12. 23)을 통해 유사중복을 해소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통합 추진

□ 조직개편 관련 추진경과

- 연구원 통합TF 회의 개최('22. 6.~) : 총 25회
 - 통합TF 6차 회의에서 연구부서는 3개 본부 체제로 결정
- 연구원 통합 실무TF 회의 개최 : '23. 6.~
 - 양 연구원 주도로 분야별(기획·연구·조직·재무·시스템·운영 등) 수시 협의
 - 조직개편 관련 양 연구원 원장 주관 연석회의 개최('23. 8. 16.)
 - 조직개편 관련 2차 회의 통해 최종 협의 및 타결('23. 8. 21.)

□ 통합연구원 조직개편(안)

○ 개편의 기본 방향

① 정책·기술분야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직으로 재설계

- (원장직속기구) 통합연구원의 혁신을 주도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'전략연구단'을 '미래융합전략실'로 확대 개편 추진
- (연구부서) 4개 연구실(디지털도시연구실, 안전인프라연구실, 도시환경연구실, 기후 변화연구실) 중심으로 융복합 연구 추진
- (연구지원부서) 본부간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원장 직속(연구기획실)의 연구 기획 기능 강화 추진

② 연구중복 관리 강화 및 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해 '3본부' 체제 도입 및 기획조정본부 분리 개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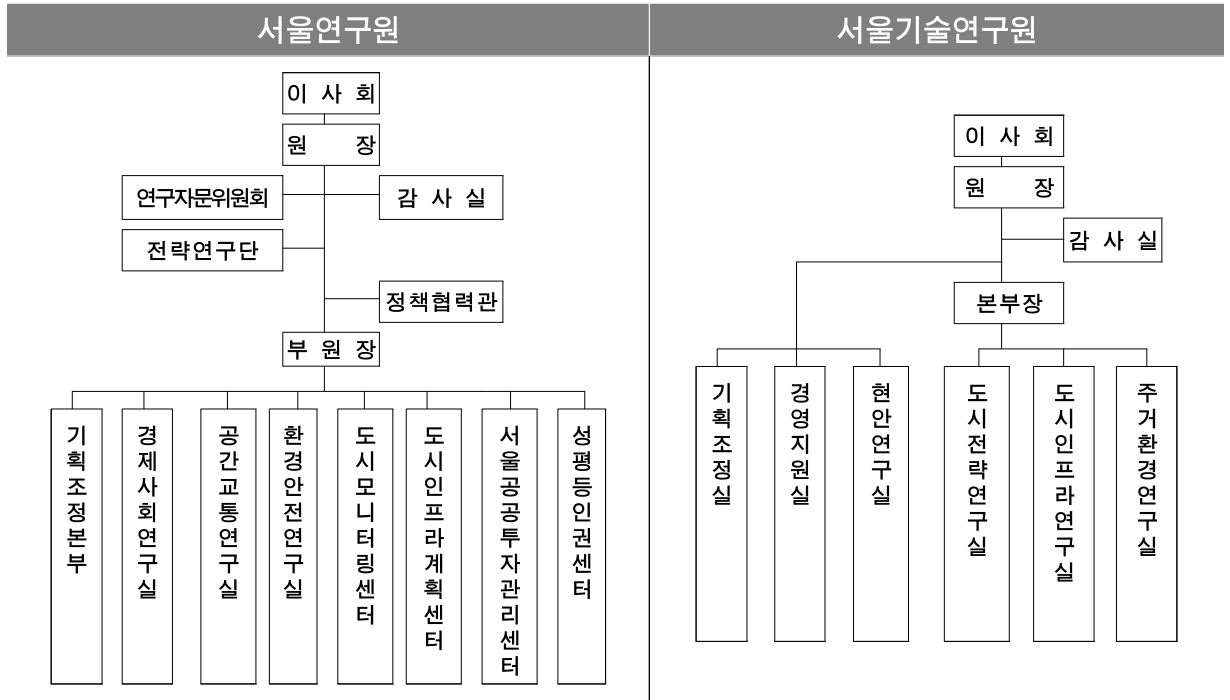
- (연구부서) 통합 후 인력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기획조정본부 중심의 집중화된 연구 관리의 실효성 저하 가능성이 있어 '3본부' 체제로 연구관리 강화 추진
- (연구지원부서) 연구관리 및 경영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'기획조정 본부'를 이원화하여 '연구기획실'과 '경영지원실'로 분리 재편

③ 시 역점사업 추진 및 미래 지향적 현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조직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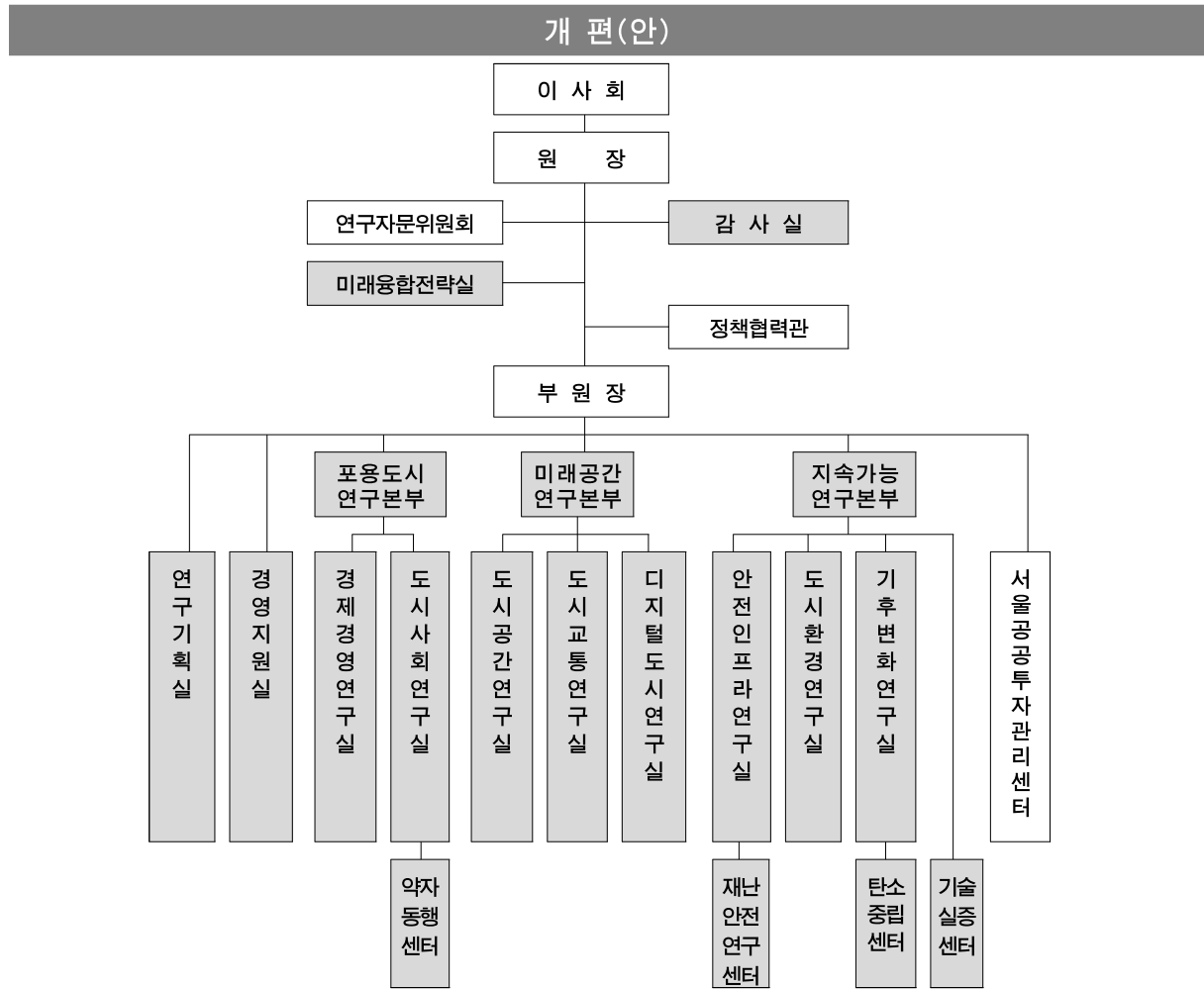
- (연구부서) 기술 중심의 미래 디지털 도시 관련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'디지털도시 연구실' 신설 추진
- (연구부서) 조례상 근거 있는 조직(약자동행센터, 재난안전연구센터, 탄소중립센터, 기술실증센터)을 정규 조직화하여 직제에 반영
- (하부조직) 연구실 아래 하부조직인 '연구단'을 설치하여 시 역점사업 지원 및 미래지향적 도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처
 - (연구단) 서울경제연구단, 청년정책연구단, 양육행복연구단, 주거혁신연구단, 100년 도시연구단 등

○ 조직 개편(안)

- 현행



- 개편(안) : 감사실, 3본부, 11실, 5센터



○ 개편 세부 내용

구 분	주요 내용
원장직속기구	<p>“통합에 따른 원장직속기구(감사실, 전략연구실)의 기능 확대”</p> <p>⇒ 기존 ‘성평등인권센터’를 ‘감사실’로 기능 이관 및 하부 기능 확대</p> <p>⇒ 기존 ‘전략연구단’을 ‘미래융합전략실’로 재편하여 기관혁신과 융복합연구 활성화 추진</p>
연구부서	<p>“통합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, 연구관리 기능 강화 및 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해 3본부 체제 도입”</p> <p>⇒ ‘포용도시연구본부’ : ‘경제경영연구실’ 및 ‘도시사회연구실’로 재편 ※ 도시사회연구실 산하에 ‘약자동행센터’ 정규조직화</p> <p>⇒ ‘미래공간연구본부’ : ‘도시공간연구실’, ‘도시교통연구실’, ‘디지털도시연구실’로 재편</p> <p>⇒ ‘지속가능연구본부’ : ‘안전인프라연구실’, ‘도시환경연구실’, ‘기후변화연구실’로 재편 ※ 안전인프라연구실 산하에 ‘재난안전연구센터’ 정규조직화 ※ 기후변화연구실 산하에 ‘탄소중립센터’ 정규조직화 ※ 지속가능연구본부 산하에 ‘기술실증센터’ 정규조직화</p>
연구지원부서	<p>“연구분야와 경영분야의 이원화를 통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확보”</p> <p>⇒ 기존 ‘기획조정본부’를 ‘연구기획실’과 ‘경영지원실’로 재편</p>

- (연구부서) 조직개편에 따른 양 연구원 조직 변화



□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역할과 기능

○ 원장직속기구

구 분	주요 업무분야
감 사 실	- 감사, 조사업무 및 근무기강 확립 -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제도개선 - 성평등·인권존중 제도 기반 구축 및 조직 문화 확립 등
미 래 융 합 전 략 실	- 조직혁신 상시 추진 - 주요 현안 융복합 연구 수행 - 시정 연구 전략 수립 및 주요 사업 평가 - 대외 협력 연구 수행

○ 연구부서

구 분	주요 업무분야	
포 용 도 시 연구 본 부	경 제 경 영 실	- 민생경제 분야(민생안정, 일자리, 소상공인), 산업 및 관광 분야 - 조직진단,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, 성과평가 - 지역상생 및 분권, 지역 거버넌스, 지방자치, 지방의회, 지방재정 등
	도 시 사 회 연구 실	- 사회·복지·보건·인구 및 교육·청소년 분야 - 문화·예술, 시민사회·공동체 분야 등
	약자동행센터	- 취약계층 배려 관점의 사업계획 검토 및 사전 컨설팅 제공 -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한 정책결정 지원 등
미 래 공 간 연구 본 부	도 시 공 간 연구 실	- 도시계획·도시재생·도시관리 분야 - 주택정책·주거복지 및 도시설계·도시경관·역사문화 분야 등
	도 시 교 통 연구 실	- 대중교통·보행 및 교통인프라 분야 - 교통운영·교통정책 분야 등
	디지탈도시 연구 실	- 스마트시티, 빅데이터·AI 분야 - 디지털 트윈, 기술융합, 신기술 분야
지 속 가 능 연구 본 부	안전인프라 연구 실	- 안전 정책 - 시설안전, 건축안전
	재난안전 연구센터	- 지진 대책 - 자연재난, 사회재난, 신종재난 대책
	도 시 환 경 연구 실	- 환경 정책 일반 - 수자원, 폐기물 및 자원순환, 공원녹지, 도시생태 등
	기 후 변 화 연구 실	- 기후변화 관련 연구 - 에너지, 미세먼지 등
	탄소중립센터	- 탄소중립 관련 계획 수립·시행 지원 -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추진 관련 정책기반 연구 수행 등
기 술 실 증 터	- 기후·환경 분야 기술 실증 사업 수행	
서 울 공 공 투 자 관 리 센터	- 재정사업 분야(투자심사 타당성검토, 타당성조사, 타당성검증) - 민간투자 분야(제안서 검토평가,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, 관리이행계획 수립) 등	

○ 지원부서

구 분	주요 업무분야
연 구 기 획 실	- 중장기 비전, 발전계획 및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- 이사회 운영, 규정관리, 국회·시의회, 예산 - 기관성과 관리 및 평가 - 연구사업 기획, 연구과제 관리 및 지원, 대외 소통 및 교류협력 - 연구보고서 및 각종 간행물 발간 등
경 영 지 원 실	- 인사, 복무, 직원 복지 및 교육 - 자금운용, 결산, 계약 등 회계 관련 업무 - 청사관리, 산업안전보건, 문서, 물품 및 장비관리 - 정보시스템 및 정보 인프라 운영 등